##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(데크플레이트 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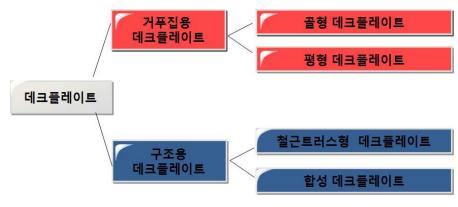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.) 제2편 제4장 제1절(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)의 규정에 의하여 철골공사 현장에서 무지보 거푸집동바리(이하 "데크플레이트 공법"라 한다)의 설계,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철골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를 무지보 거푸집동바리인 데크 플레이트로 조립·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데크플레이트(Deck plate)"이라 함은 아연도금 강판,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서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파형으로 성형된 판을 말한다. 단면을 사다리꼴 모양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성형함으로써 면외방향의 강성과 길이 방향의 내좌굴성을 높게 한 것을 말한다. 종류로는 거푸집용과 구조용이 있다.



<그림 1> 데크플레이트 분류